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 상 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상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규제 혁신 차원에서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